

제316회 정례회

2012.12.20(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0 (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권기수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2년 12월 3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12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12월 13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이를 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 신설(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송장섭)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수산물수출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에서 정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수산물과 수산</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 -----.</p> <p>1. -----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농수산물과</p>

현행	개정안
<p>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 ~ 제10조(생략)</p> <p>제11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회의의 운영)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u>농수산가공품</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 ~ 제10조(현행과 같음)</p> <p>제11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u>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관 계 법 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물에서 생활

하는 동식물의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6. "친환경수산물등"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